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76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강경숙 · 황운하 · 김선민
임호선 · 진선미 · 김재원
정춘생 · 백선희 · 박은정
서왕진 · 정을호 · 신장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보호자가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쇄 또는 운영정지로 불가피한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중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의 고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 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u>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u> <u>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u> <u>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u> <u>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 를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⑥ (생략)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다음 <u>각 호의</u> -----. 1. <u>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u> <u>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u> <u>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u> <u>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u> <u>조치</u> 2. <u>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u> <u>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u> <u>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u> <u>다는 사실의 고지</u> ⑥ (현행과 같음)